

# 멀티미디어 産業과 美國 著作權法

저자: 丁相朝

발행년도: 1994

문헌: 著作權

권호: 25호 (1994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55]

## I. 멀티미디어 産業의 現況

\_ 컴퓨터화면을 통해서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내용의 뉴스나 영화 등을 선택해서 볼 수 있거나 또는 베토벤의 교향악을 감상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악보를 동시에 살펴보고 동시에 베토벤 개인에 관한 모든 문자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때로는 악보 가운데 듣기 싫은 악기(예컨대 바이올린)의 연주만을 삭제한 채 감상할 수도 있다고 상상해본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문화환경 또는 꿈같은 사회환경이 될 것인가? 그러나, Digital technology의 발전으로 문자정보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의 영상 및 음성정보까지 0과 1등의 Digital information으로 변환·압축될 수 있게 되었고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보급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상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_ 뉴스 등의 TV프로그램과 영화 및 비디오게임을 소비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 미디어업체가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가 이미 본격화되었는 바, Viacom은 약 1개월여 전에 100억 달러를 지급하고 헐리우드 영화제작업자 Paramount Communications를 인수함으로써 급부상하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산업의 성패는 많은 분량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고,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장거리전화 전문업체 MCI Communications는 소수의 합작선들과 함께 우선 20여개의 대도시에 fibre optic cable을 배선하여 소위 information super-highway를 구축하기 위하여 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다.주1) 일본 정부도 멀티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올해 5백억엔 이상을 투입하여 멀티미디어 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과 정부가 이와 같은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의 멀티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멀티미디어 시장의 규모는 1996년에 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멀티미디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작년의 국내시장도 약 2백13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II. 멀티미디어의 概念

\_ 멀티미디어라는 용어가 자주 이용되고 있지만 그에 관한 통일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혹자는 文字정보, 音聲정보, 映像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multimedia software)를 말하고, 또 다른 혹자는 컴퓨터와 전화, TV, Audio를 결합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multimedia hardware)를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전자제품과는 상이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고, 멀티미디어의 컴퓨터에 의하여 작동되고 전달되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는 아날로그 정보의 형태가 아니라 0과 1등의 Digital information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기존 정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행 著作權法制度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멀티미디어라고 함은 문자정보, 음성정보, 영상정보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저작물로 파악하고, 그러한 복합적 저작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의 도움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고 CD-ROM 등의 디지털정보 전달매체에 압축저장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_ 멀티미디어의 예를 보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멀티미디어는 직업훈련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생도가 작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 관한 영상정보와 작업방법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자정보 및 관련된 음성정보가 제공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훈련을 받고있는 생도들의 학습속도와 반응에 따라서 상이한 대응과 진도를 나가도록 만들어진 interactive 멀티미디어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에 응용된 멀티미디어가 많이 개발되었고, 베토벤의 교향악 연주내용 자체와 그 악보 및 베토벤 사진 그리고 그에 관한 문자정보 등의 복합적 형태의 백과사전류라거나 각종 서지류가 CD-ROM으로 출판되어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다.주2)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작권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Digital information의 형태로 된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멀티미디어와 著作權法상 創作性의 基準

\_ 멀티미디어의 저작권법상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멀티미디어 자체에 대한 著作權과 멀티미디어의 제작에 이용된 原著作物에 대한 著作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멀티미디어 자체의 저작권의 살펴봄에 있어서는 멀티미디어를 제작하는 출판업자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 특히 멀티미디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 요건을 갖추

[57]

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작물이 하나의 CD-ROM 등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입력되어 다시 편집되고 전달되고 이용되는데, 이러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하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CD-ROM형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물 또는 정보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른바 編輯著作物인 경우에 그러한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는다. CD-ROM형태 등의 편집저작물이 다수의 原著作物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의 무단복제가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한 편집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편집저작물이 일반적인 公有의 情報

(information in public domain)인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존재 여부에 관한 회의는 더욱 커진다.

#### 1. 編輯著作物의 創作性

— 英美에서 著作物이란 著者의 독자적인 "努力과 資本의 투입(Sweat of the brow)"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고 파악되어 왔고 따라서 대부분의 編輯著作物이 많은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英美에서 이와같이 편집저작물의 보호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편집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포함되어 있는 事實과 情報 자체까지 보호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著作權法은 아이디어나 情報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 편집저작물에도 적용되어서, 최근 美國 判例에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은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독자적이고 창작적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著作物性 基準의 변화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09년 聯邦著作權法은 저작물성의 기준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저작물의 예로서 몇가지의 대표적인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명록, 전화번호부 등의 편집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1909년 저작권법에는 인명록 등의 편집저작물이 저작물로 예시되어 있어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특정 편집저작물의 제작에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것인 한 저작물로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후 개정된 1976년 聯邦著作權法은 예시되어 있었던 저작물을 삭제하고 그대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을 설명하는 조항에서 "창작성(original)"는 형용사를 삽입함으로써 창작성있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주3) 특히 편집저작물을 "기존의 자료 또는 정보가 선택·배열·구성된 저작물로서 創作的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주4)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요건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1976년 저작권법의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기존 판례상의 저작물성의

[58]

기준을 성문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1976년 저작권법하에서는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이 부인된 경우가 많아진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Financial Information, Inc. v. Moody's Investors Service., Inc.,주5) 사건에서, 매일매일 社債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채목록카드의 저작물성에 관해서, 사채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단순작업에 해당되고 문제된 사채정보의 수집 및 편집에 사채카드 제작자의 독자적인 판단력이 개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된 사채목록카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여기에서 관할 항소법원은, 노력과 자본의 투입이라고 하는 기준만에 의해서 저작물의 성립을 인정하면, 많은 범위의 사실과 정보들이 소수의 선발 저작권자에게 독점되고, 결과적으로 후발업자들과 일반 소비자 공중의 정보에의 접근이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 최근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주6) 사건에서는 電話番號簿의 著作物性이 문제되었는데, 지방법원과 抗訴法院은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했는데,주7) 美國聯邦大法院은 전화번호의 수집에 노력과 자본을 투입한 것만으로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집한 전화번호의 선택에 창작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알파벳 순이라고 하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화번호부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Feist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창작적인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항소법원들의 상호모순되는 판결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Feist판결이 編輯著作物 일반에 널리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CD-ROM 등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단 편집저작물에 있어서 다른 저작물과는 상이한 창작성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2. 멀티미디어에서의 創作性

\_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어 온 "아이디어와 表現의 융합(merger of idea and expression)" 이 편집저작물에 적용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의 저작권법적 보호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즉, 상당수의 편집저작물에 있어서 그 구성 소재들이 한정된 방법으로 정리·배열될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한도에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등이 발전된 소위 人工知能(Artificial Intelligence)에서와 같이, 정보베이스 또는 지식베이스

[59]

(knowledge base)와 論理엔진(inference engine)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논리엔진에 의하여 지식베이스의 지식과 정보가 일정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경우에, 유사한 지식베이스가 경쟁적인 업자들에 의하여 이용될 것이고 지식베이스 자체의 저작권법적 보호의 범위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융합으로 인하여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주8)

\_ 멀티미디어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하는 경우에, 멀티미디어를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해야 할 것이고,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에 그 창작성 기준은 Feist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여준 "選擇, 整理 또는 配列의 創作性"에 의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멀티미디어는 종이책으로 된 편집저작물과는 달리 그 소재되는 사실과 정보들의 정리 또는 배열이 한눈에 보여질 수 없는 것이고, 멀티미디어에서의 정리 또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정보의 압축(Data compression), 저장(Storage), 검색(Retrieval)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압축, 저장, 검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에서의 "선택, 정리, 배열의 창작성"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창작성은 그 소재되는 사실과 정보들의 압축, 저장, 검색 등에서의 창작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작성 기준에 의하여 멀티미디어를 보호하는 경우에, 소재되는 사실과 정보들의 수집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정보 자체는 보호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은 여전

히 남게 되고, 이에 관한 심각한 토론과 연구가 진행중이다.

#### IV. 原著作者와의 관계

##### 1. 著作權集中管理를 통한 原著物의 이용

\_ 멀티미디어의 제작·보급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십권 책 분량의 정보와 사실 또는 저작물이 용이하게 복제되고 개작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신속하고 간이하게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특히 멀티미디어는 대부분 다수의 原著物을 수집하고 편집·배열·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러한 원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용하고자 하는 원저작물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당해 원저작물의 저작자 및 이용조건 등의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용료의 산정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하지 아니하면 저작물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되버린다.

\_ 우선, 원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관이 원저작물의 등록을 받고 공표된 원저작물의 목록과 저작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위 무방식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著作物의 登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著作物利用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60]

저작물에 관한 정보가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著作權集中管理(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저작권집중관리가 없으면,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 소재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재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누가 저작자인가 하는 것과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特許法 등의 다수의 産業財産權法의 경우에는 權利設定登錄이 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_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著作權集中管理(Collective administration)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다.주9) 특히 복합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音樂著作權協會와 특정 범주의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에 한걸음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범주의 저작물을 모두 총괄하여 집중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대한 이용허락조건이 통일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경우에는 다수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되고 이용자 또는 경쟁업자들은 그러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제3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原著物과 저작물과의 관계는 2중, 3중으로 생기게 되고, 또한 멀티미디어의 이용에 있어서 그 소재되는 저작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용

이하에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改作에 대한 이용료의 산정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2중, 3중의 원저작물 이용 또는 개작의 경우의 이용료를 통일적으로 산정하여 저작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주10)

## 2. 著作權集中管理센터

\_ 미국의 著作權集中管理센터(the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를 살펴보면,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改正著作權法에 따른 著作物利用節次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자, 출판사 그리고 저작물이용자의 3자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다. 저작권집중관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배경은, 출판사들이 저작권집중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료징수를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주로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에 관한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회는 결론적으로 저작물이용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간이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61]

할 것을 제안하였었다.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바로 이러한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1978년에 설립된 것이다.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대학수업에 이용될 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복제업자가 행한 다량의 拔萃複製도 복제업자의 이윤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한 公正利用(Fair use)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한 최근의 판결 Basic Books v. Kinko's Graphics주 11) 등에 비추어보면, 모든 교육기관과 商事企業들이 똑같이 公正利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저작물이용에 著作權者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_ 이러한 미국의 著作權集中管理센터의 기능을 보면,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저작물이용자를 위해서 이용허락을 받고 또한 저작권자를 위해서 저작물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非營利 團體이다.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著作權集中管理센터가 애초에 뉴욕의 非營利會社法에서 따라서 설립되었다는 것이지만, 1982년에 저작권집중관리센터와 國稅廳과의 소송(CCH Dec. 39, 482-79 TC No. 51)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집중관리센터는 출판사들의 출연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聯邦稅法上(Sec. 501(c)(3) I. R. C. 1954) 소득세 면제대상은 될 수 없다.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包括利用許諾制度 또는 年別利用許諾制度(Annual Authorizations Service: AAS)에 의해서 團體利用者들에게 8천개 가량의 출판업자에 의해서 소유된 1백만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해 주고 있다.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또한 저작물이용자가 개별적으로 著作物利用時마다 저작물이용을 통지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해주는 個別利用許諾制度라고 할 수 있는 去來報告制度(Transaction Reporting Service: TRS)도 마련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著作權集中管理센터에 자신의 저작물을 登錄하는 데에는 아무런 費用이 들지 않고 저작물이용자도 객관적 이용료 이외의 아무런 추가적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이러한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大學과 政府機關들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고, 저작물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接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_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여러 가지 방식의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바, 1978년도에 마련한 個別利用許諾制度(TRS)는 저작물의 복제를 보고하는 수동적 방법에 기초하

고 있다. 저작물이용자들은 자신의 복사기 옆에 저작물 복제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마다 저작물 복제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용료를 지급한다. 個別利用許諾制度는 따라서 저작물 복제에 관한 계속적인 기록과 보고를 필요로 한다. 個別利用許諾制度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매4기분마다 갱신되는 저작물 목록에 있는 것에 한정된다.

\_ 또한 包括利用許諾制度(AAS) 또는 年別利用許諾制度는 저작물에 대한 迅速하고 效率的인 接近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기타의 대규모단체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저작물이용자는 약 8천개의 출판사로부터 출판된 1백만여 저작물에 대한 내부적 복제를 매년 허락받으며 연별 一回支給에 의한다. 추가적인 複製記錄義務라든가 추가적인 지급의무는 없다. 이 제도에서 저작물이용료는 특정산업내의 일정 사업

[62]

장에서 60일간 실제로 이루어지는 저작물복제에 대한 標本調査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다. 각 출판사가 정한 利用料率과 함께 상당수의 표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각 업체별 연별 이용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표본조사에 의해서, 個別利用許諾制度에 의한 이용료산정에 부수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경감된다.

\_ 標本調査의 價値: 包括利用許諾制度에 있어서, 複製許諾條件을 정하기 위한 표본조사는 간이신속한 이용절차를 요구하는 저작물이용자와 이용료지급의 正確性을 요구하는 출판업자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적극적이고 균형된 해결방법이다. 이러한 표본조사에 있어서 複製行爲實態에 관한 정보수집은 60일간에 걸쳐서 특정 회사사업장들에서 저작물이 실제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복제되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해서 수집된 情報는 統計方法論에 따라서 분석되어서, 네가지의 산업별 종업원들의 각 종업원군이 이용하는 저작물의 이용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_ 여기에서 수집된 情報의 正確性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표본조사대상인 회사는, 저작물이용허락 조건으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著作權集中管理센터도 표본조사대상인 사업장의 방문과 컴퓨터분석을 통해서 이용료를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구체적인 業務分野와 전반적인 종업원들의 職務가 정확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

\_ 이와 같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표본조사대상이 선정되면,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調査專擔班을 조사대상인 사업장 현지에 파견해서 관련된 종업원들에게 助言과 訓練 등을 제공해준다.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저작물이용실태조사함이라던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협조문 또는 표어 기타의 자료뿐만아니라 자세하고 포괄적인 저작물이용실태 조사방법론에 관한 설명책자도 조사대상인 사업장에 공급해준다.

\_ 包括利用許諾制度의 범위: 이용허락은 미국내의 모든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여 저작물이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허락은 著作權集中管理센터에 등록된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아무런 기록이나 報告의 의무없이 고정된 이용료율의 적용을 받으며, 1년간 유효하고 물론 2년차에 更新될 수 있다. 다만 이용허락조건이 실제의 복제실태를 기초로 한 것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2년마다 각 이용자의 두 개의 사업장에서 60일간의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출판사는 저작물이용자에 대해서 종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_ 計量經濟學的 利用許諾制度(Econometric model): 어떤 저작물이용단체는, 산업별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한 저작물복제에 관한 자료에만 기초해서 산정된 이용료율에 기초

한 包括利用許諾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著作權集中管理센터는 계량경제학적 이용허락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통상의 표본조사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보와 社內저작물이용실태조사가 요구된다. 계량학적 이용허락제도의 경우에는, 사내 여러장소에서 약 15%가량의 복사기를 대상으로 해서 복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회사전체의 저작물이용실태를 추정하게 된다.

[63]

\_ 계량경제학적 이용허락제도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국전역의 본점 및 지점의 全従業員들의 總數와 그들의 주요직무 그리고 全複寫機의 總數와 그 使用目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著作權集中管理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복사기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복사기들을 선정하고 이들 복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사실태에 대해서 60일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계량경제학적 이용허락제도는 이용자 자신이 조사한 저작물복제에 관한 자료에만 기초해서 이용료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한 포괄이용허락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

## V. 原著作者 權利의 消盡

\_ 멀티미디어 보급의 일반화에 따라서 저작물 유통과 이용이 급증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이 2중, 3중, 4중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따라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용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소재로 한 명화전집의 멀티미디어를 제작한 경우에 특정 영상저작물의 내용으로 된 소설이나 음악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멀티미디어 전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특정 원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있어서 특정 地域내에서의 배포를 조건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한 당해 멀티미디어의 國際的 보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된 저작권접권도 최초의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일반화 및 무선·유선의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물이용 및 공급이 다수의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모든 단계의 저작물이용에 대해서 완전한 형태로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이미 출판되어 시판된 바 있는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원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_ 이러한 의견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판매용음반의 제작에 관한 法定利用許諾制度"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음반이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 즉 제3의 경쟁적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12) 멀티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

함에 따라서 판매용음반 속의 음악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일반 저작물 전체에 대하여 법정 이용허락을 확대하고 출판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구한다는 등의 요건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다.주13) 또한,

[64]

영국의 1990년 放送法은, 放送프로그램이 TV저널이나 전산망의 소비자 정보란 등에서 소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국이 방송프로그램 목록이라고 하는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제한하여,주14) 방송프로그램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멀티미디어의 법제화에 있어서 고려해볼만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VI. 멀티미디어 供給業者의 보호

\_ 멀티미디어의 이용이 일반화·활성화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를 공급하는 기업이 생기게 되고, CD-ROM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CD-ROM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공급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수의 CD-ROM과 기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멀티미디어 공급업자의 저작권법적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방송사업자 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물을 녹음, 녹화, 복제, 방송할 권리라고 하는 著作隣接權주15) 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멀티미디어 공급업자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무선 또는 有線에 의하여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선송신의 방법으로 멀티미디어를 공급하는 有線送信事業者에게도 유사한 저작권접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_ 有線送信에 관하여 日本은 그 저작권법 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멀티미디어에 관한 데이터통신에 관하여 종전 저작권법은 著作隣接權은 물론 저작권자의 유선송신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었다. 종래의 저작권법에는 有線放送權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데이터의 흐름이 一方向型인 CA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것이 雙方向型인 데이터통신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보호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 개정저작권법에는 새로이 有線送信權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주16) 이러한 유선송신권에는 종래의 유선방송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법개정의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에는 저작자의 유선송신권이 미치게 된다.주17)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는 전산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를 공급하는 멀티미디어 공급업자에게 著作隣接權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 내용의 일부로서 有線送信權을 규정함으로써 멀티미디어 공급업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日本 저작권법하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공급업자 또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가 원 제작업자로부터 提供을 받은 原 데이터를 加工해서 附加價値를 加하여 提供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가공 행위에 創作性이 認定되면, 二次的著作物의 著作者로서 保

[65]

護를 받게 될 뿐이다.주18)

## VII. 멀티미디어에 관한 複製權

### 1. 멀티미디어와 複製의 개념

– 대부분의 멀티미디어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제작되고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컴퓨터의 도움으로 제작·배포·이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으로 된 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제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멀티미디어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멀티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하여 저작권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複製의 의미를 새롭게 구체화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美國의 議會 技術評價局(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은 수년전부터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오고 있다.

–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有形物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멀티미디어의 출현과 관련하여 복제의 의미를 보다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복제의 개념에 의하면, 멀티미디어를 컴퓨터화면을 통해서 보는 등의 무단 이용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개개인 소비자들이 특정 정보를 책이나 프린트아웃된 유형물로 소유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전산망을 통해서 접근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利用 또는 無形的인 複製도 저작권 침해로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가 하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주19)

– 情報産業技術(Information technology)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무형적 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우선 유럽공동체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委員會 指針"에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내용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동시키거나 보거나 입력 또는 저장시키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복제행위 금지된다(주20) 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유럽공동체의 이러한 지침은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전통적인 복제의 개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해당되는 행위도 복제로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보호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마련된 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적법하게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한 소비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이용행위를 허락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구입자 이외의 제3자는 설사 구입자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66]

그리고 프로그램을 플로피디스크에 복제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이다.

– 또한, 英國 저작권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복제의 개념 속에 "저작물을 어떠한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電子的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일시적인 형태의 사본이나 저작물 이용에 수반되는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이와같이 복제에 해당된다(주21) 고 규정되어 있다. 영국 저작권법이 1988년도에 개정되면서 이와 같

이 복제에 관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취지가 멀티미디어 등의 정보산업기술이 응용된 저작물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인다.

\_ 멀티미디어로부터 프린트해내거나 컴퓨터하드디스크에 저장시키는 행위를 복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짐에 따라서 멀티미디어 제작업자들은 최종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만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shrinkwrap licenc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제작 및 공급업자와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는 다수의 중간업자가 개입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고 그러한 경우에 멀티미디어 제작업자가 마련한 정보이용허락계약이 최종소비자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최종소비자가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는가하는 계약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주22) 또다른 한가지 문제는 설사 그러한 사용허락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멀티미디어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취득자와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英國의 1988년 저작권법은 "전자형태의 저작물(a work in electronic form)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複製 또는 改作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使用許諾契約하에 판매되어서 제3자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에는, 상이한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양수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 2. 圖書館에서의 複製 및 貸與

\_ 대부분의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경우에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나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능이 情報와 資料의 提供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인정된 것인 바,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그대로 멀티미디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대학정보센터가 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 온라인 정보전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종이책으로 된 정보 뿐만아니라 다양한 CD-ROM에 담긴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지 문제된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여라고 볼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

[67]

되는 것은 도서관이 모든 도서와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당부분의 도서와 자료가 멀티미디어 등의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로 되어 있어서 공급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학생 등의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와 자료를 빌려서 고객의 요구에 응해왔고, 복제기술과 컴퓨터기술이 발전한 이체는 당해 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도서 또는 자료의 사본을 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의 컴퓨터에 직접 전송해주고 나아가 고객은 그러한 이미지 정보를 문자인식(character recognition)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문자파일(text files)로 변환하여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인 것이다.주23)

\_ 대여라고 보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公衆貸與權(retal rights)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도서관에 의한 대여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공중대여권이 도

입된다면 도서관의 대여행위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특히 CD-ROM 등의 멀티미디어를 대여해 주는 것은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_ 도서관으로서 소장 자료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여해주는 업무 뿐만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하여 색인을 만들게 되는 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의 索引을 각색하거나 目次를 變更하는 경우에 著作權侵害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멀티미디어를 대여하거나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 후 당해 멀티미디어를 복제하는 등의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도서관은 저작권침해 또는 계약위반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주24)

\_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적이용(private use) 또는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하여도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종이책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를 프린트해내거나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의 개인적 전자기억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문제될 것이다. 또한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출력 또는 복제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보다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복합저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물이 용료 기준에 의해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계산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

주1)

Financial Times(5 January &16 February 1994)

주2)

Andrew White, Multimedia and Copyright Law, Copyright World (September 1993), p.21

주3)

Manfred Kindermann,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in Germany, [1991] EIPR 300

주4)

17 U.S.C.A. Sec. 101

주5)

美國 1976년 著作權法 102(a)조

주6)

808 f.2d 204, 206-8(2d Cir. 1986)

주7)

Ringer, Copyright in the 1980s, 23 Bull. Copyright Soc'y 299, 305(1976)

주8)

[Arthur R.Miller, Copyright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Databases, and Computer-generated Works; Is Anything New Since CONTU?, 106 Harv.L.Rev. 977\(1993\)](#)

주9)

石田正泰, マルチメディアソフトの創作と知的財産權 問題, SOFTIC Symposium Presentation Paper(1993.11)

주10)

日本 著作權審議會 第7小委員會, 데이터베이스 및 뉴미디어에 관한 보고서(昭和 60年 9月, 文化廳)도 동일한 취지의 보고를 한 바 있음.

주11)

758 F. Supp. 1535 (1991, SDNY)

주12)

한국 [저작권법 제50조](#)

주13)

Brian Ka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blem in Multimedia and the IMA Strategy, SOFTIC Symposium (1993. 11. 10-11)

주14)

Section 175 of the Broadcasting Act 1990

주15)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및 [제69조](#)

주16)

日本 著作権法 제2조 제17호는 有線送信을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선통신의 송신(유선전기통신설비로서 그 일부분의 설치의 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의 장소와 동일 구내(그 구내가 2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하는 구역내)에 있는 것에 의한 송신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17)

유선송신권에 관하여는 日本 저작권법 제23조 참조.

주18)

日本 著作権 審議會 제7小委員會, 데이터베이스 및 뉴미디어에 관한 報告書 (昭和 60년 9월, 文化廳)

주19)

Robert D.Hadl, The Crisis in International Copyright, 16 Columbia-VLA Journal of Law &the Arts 438(1992)

주20)

Article 4(a) of the EC Council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21)

Section 17(2) and (6)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주22)

David Lester and Paul Mitchell, Joyson-Hicks on UK Copyright Law(London, Sweet &Maxwell, 1989), p.188

주23)

Carol A.Risher, Copyright and New Technology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rospects for the Book in Age of Muti-media, UNESCO, 17-19 November 1993)

주24)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Finding a Balance: Computer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hallenge of Technological Change (OTA, US Congress 1990), p.18